

한국은행 부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(안)

2024. 3.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」(이하 “세칙”) 및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」(이하 “절차”)에 따라 한국은행 부산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대상) ① 부산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지원 대상은 <별표1>에서 정한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로 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<별표2>에서 정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사후심사 자료제출) 본부장은 절차 제5조에 따른 사후심사시 금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대출금원장(사본)
2. 대출취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(사본)
3. 금리산출표(사본)
4. 지원대상업체 입증 서류(유관기관 인증서 및 추천서 등)
5. 기타 부산본부장이 요청한 서류

제4조(평가관리 기준) 절차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.

1. 금리 감면폭(30%)
2. 제출자료의 정확성(20%)
3. 제출기한 준수 여부(20%)
4. 규정 준수 여부(20%)
5. 제도에 대한 이해도(10%)

제5조(기타 사항)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」,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」,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」 및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」 등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 <2019. 12. 20.>

이 기준은 2020년 1월 1일(2020년 3월 한도배정 시)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취급된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21. 9. 1.>

이 기준은 2021년 9월 1일(2021년 11월 한도배정 시)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취급된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21. 12. 15.>

이 기준은 2022년 1월 1일(2022년 3월 한도배정 시)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취급된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22. 4. 15.>

이 기준은 2022년 5월 1일(2022년 7월 한도배정 시)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취급된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23. 3. 29.>

이 기준은 2023년 4월 1일(2023년 6월 한도배정 시)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취급된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23. 9. 1.>

이 기준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2항의 개정 기준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4. 3. 1.>

이 기준은 2024년 3월 1일(2024년 5월 한도배정 시)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취급된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24. 3. 29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<별표 1>

지원대상업체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¹⁾²⁾

지원대상 코드	지원 대상	지원 부문	선정기준
A2	벤처 기업	일반	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 해당업체 (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)
A3	혁신 기업	일반	-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」 제13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(Inno-Biz) (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) - 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 (제조업 영위기업으로서 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) - 신기술(NET) 또는 신제품(NEP) 마크 획득업체 (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)
A4	녹색 기업	일반	- 아래의 해당 업체중 제조업(KSIC 10~33) 및 수도·하수및폐기물처리·원료재생업(KSIC 36~38)을 영위하는 기업 (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) ○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○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8조에 의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○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6조의2에 의거 환경부가 선정한 녹색기업 ○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인증한 GR마크(우수재활용제품 인증)가 부여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
A7	지역 특화 산업 영위 기업	일반	-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(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) ○ 운수 및 창고업(KSIC 49-52) (단,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해당하는 업종, 육상 여객 운송업(KSIC 492), 외항 및 내항 여객운송업(KSIC 50111, 50121), 주차장 운영업(KSIC 52915)은 제외)
A8	지역 전략 산업 영위 기업	전략	-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○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(KSIC26429) ○ 레이더,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(KSIC27211) ○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(KSIC27216) ○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(KSIC28119) ○ 축전기 제조업(KSIC28202) ○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(KSIC29142) ○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KSIC 30) ○ 선박 및 보트 건조업 (KSIC 311) ○ 도로화물 운송업(KSIC 493) ○ 해상운송업(KSIC 501) (단, 외항 및 내항 여객운송업(KSIC 50111, 50121)은 제외) ○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(KSIC 502) (단, 내륙 수상 여객업, 항만내 여객운송업(KSIC 50202)은 제외) ○ 항공화물 운송업(KSIC 512) ○ 화물취급업(KSIC 5294) ○ 정보통신업(KSIC 58~63) ○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KSIC 70~73) - 「부산테크노파크」가 발급한 확인서류 제출기업 - 「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」가 발급한 확인서류 제출기업 - <별첨 1>의 '부산시 지역주력산업'을 영위하는 부산시 소재 기업

지원대상 코드	지원 대상	지원 부문	선정기준
A9	전입기업	일반	- 타 지역으로부터 부산광역시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(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)
A10	수출관련 기업	일반	-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(창업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)
A11	소재부품·장비 전문기업	일반	-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3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-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4조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-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-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34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신뢰성인증 마크를 획득한 기업
A13	농림수산업 관련기업	전략	-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표준산업분류표상 01~03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하 농림축산업자·농어업법인
A14	명절·재해 자금 등 필요기업 ³⁾	일반	- 명절, 자연재해 및 지역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
A15	기타 지원기업 ³⁾	일반	-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해, 거래업체 부도, 경영악화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등 본부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- 부산광역시로부터 「전략산업 선도기업」으로 인증된 기업 - 「부산 서비스 강소기업」으로 선정된 기업 -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에 의거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- 「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부산광역시가 인증한 예비사회적기업(비영리 법인·단체는 제외) -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위기징후 “주의” 또는 “심각” 단계 지역 소재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
A16	경기부진·경기민감 업종 영위기업	특별	-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²⁾ ○ 음식·숙박업(KSIC 55-56) ○ 도소매업(KSIC 45-47) ○ 여행업(KSIC 752) ○ 여가업(KSIC 90-91) (단,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(KSIC 912)은 제외)

주 : 1)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실행일이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
2) 지원대상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
3) 본부장이 지원비율·지원한도·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

<별표 2>

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¹⁾

업종명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(KSIC, 제10차) ²⁾
주류, 담배업	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
운송관련 서비스업	52915 주차장 운영업
주점업 ³⁾	5621 주점업
금융 및 보험업	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부동산업	68 부동산업
전문서비스업	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
수의업	731 수의업
교육 서비스업	855 일반 교습학원
보건업	86 보건업
오락관련 서비스업	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11 이용 및 미용업 96122 마사지업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

- 주 1) 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
- 2) 배정제외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, 소분류로 표기된 경우 하위 분류에 해당하는 세세분류 영위 업종은 모두 배정제외업종에 해당
- 3) 상호명에 '포차', '호프', '맥주', '비어', '바' 등 주류명이 포함된 경우 사업 자동등록증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

<별첨 1>

부산시 지역주력산업

주력산업	분류코드	세부업종
초정밀 소재부품	C25999	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
	C29142	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
	C29294	주형 및 금형 제조업
	C29299	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
	C29133	탭, 밸브 및 유사장치제조업
저온고압 에너지저장 공급시스템	C28119	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
	C28123	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
	C29132	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
	C29176	증류기,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
실버케어테크	C25122	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
	C27192	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
	C22299	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
	C27199	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
	C27213	물질 검사,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
C27215	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	